

대통령령 제 호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2 제2호조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조. 법 제26조제5항(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2	1,500	2,200	3,000
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(제27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단서 신설> 다. ~ 마. (생략) 2. 개별기준	[별표 2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(제27조 관련) 1. 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. <u>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 2. ----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~ 오. (생 략)				
<신 설>				
조. ~ 루. (생 략)				

-----	-----	-----		
		-- --	-- --	-- -- --
가. ~ 오. (현행과 같음)				
<u>조. 법 제26조제5항(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u>	<u>법 제54조 제1항제13호 의2</u>	<u>1,500</u>	<u>2,200</u>	<u>3,000</u>
<u>초. ~ 무. (현행 조내지 루와 같음)</u>				